

의안번호	제 289 호
의 결 년 월 일	2002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##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년월일	2002. 12. 18.

#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

의안번호	789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12. 18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## 1. 제정이유

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정책개발·연구 및 여성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·자문을 전담할 위원회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기금운용설치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가.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심의·자문의 기능(안 제4조)

나.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소집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내지 제10조)

다. 위원회운영시 전문가 등의 의견정취(안 제11조)

라. 여성발전기금조성의 재원(안 제16조)

마. 여성발전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)

바. 여성발전기금의 운용관리 및 계획(안 제18조 내지 제20조)

## 3. 참고사항

### ○ 근거법령

-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: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복지 등을 위한 재원조달의 책무
- 지방자치법 제133조 : 재산 및 기금의 설치
-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2 :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의한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

○ 입법예고 : 2002. 11. 7 ~ 2002. 11. 26 - 특기할 사항 없음

## 4. 본문 : 덧붙임과 같음

##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

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 개발·연구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여성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고성군여성발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설치 및 관리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책무) ①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남녀평등의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정책을 개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
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·자문기관 및 기금을 설치할 책무를 진다.

### 제2장 여성정책발전위원회

제3조(위원회의 설치) 군수는 여성정책개발·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자문한다.

1.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여성정책 개발·연구에 관한 사항
2. 여성관련 의견, 정보수집·제공 및 각종 여성문제에 관한 사항
3.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
4.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
5. 기타 여성관련 주요사항

제5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, 사회복지과장, 여성단체협의회회장으로 한다.

④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며 군수가 위촉한다.

1.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
2.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여성계 대표 3명
3. 여성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개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

제6조(위원의 임기)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.

②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,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③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, 보궐위원의

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위촉직 위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
2.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
3. 위원이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위원회의 운영) ①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분과를 둘 수 있다.

②분과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0조(회의)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회의는 정기회·임시회로 운영하고,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, 임시회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,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.

③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, 장소, 토의안건 등을

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의견청취 등)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·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전문기관·단체 등을 통한 조사·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·세미나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2조(간사 및 서기) ①위원회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.

②간사는 여성복지담당으로 하고, 서기는 여성복지담당자로 한다.

제13조(실비보상) ①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이 조사·연구활동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
### 제3장 여성발전기금

제15조(기금의 설치) ①여성정책의 개발·연구 및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.

②기금의 목표액은 3억원으로 하며, 설치된 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한다.

제16조(기금의 재원) ①기금은 다음 각호를 재원으로 한다.

1. 국가 및 고성군의 출연금
2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3. 기타 수익금

②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제17조(기금의용도)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.

1. 여성정책의 개발·연구
2.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
3. 여성단체의 육성·발전을 위한 지원
4. 여성단체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
5. 우수여성지도자 양성 및 여성지도자 국내·외 연수
6. 기타 여성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기금의 사용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액의 범위안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,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전액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.

제18조(기금의 운용관리)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②기금은 고성군 금고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19조(회계공무원)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 : 사회복지과장

2. 기금출납원 : 여성복지담당

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 관리한다.

제20조(기금운용계획)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
2.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
3. 기금과 재산에 관한 사항

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

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1조(기금결산) ①기금운용관은 출납폐쇄후 9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2조(관계규정의 준용)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·지출의 절차·출납 및 보관과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 의 예에 의한다.

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

제2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